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2026학년도 후기 수시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안내

구분	내용
학과구분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 스마트융합제품전공 / 스마트팩토리컨설팅 / ESG융합컨설팅 中 택 1)
수업형태	▶ 수업시간 : 토요일 전일제 수업 (선수 및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평일 야간에 개설될 수 있음) ▶ 수업장소 : 한성대학교 본교 상상관 (4호선 한성대입구역,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 대면수업 진행 예정
수업연한	3년 6학기 (2년 학위과정, 1년 논문과정)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 허용)
졸업요건	36학점이상 이수, 논문필수, 외부학술대회 게재실적 1건, 종합시험 합격, 공개발표, 논문심사 등 학칙이 정하는 규정을 통과한 자

◆ 모집학과 및 전공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전공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박사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 스마트융합컨설팅(컨설팅학박사) - 스마트융합제품(공학박사) - 스마트팩토리컨설팅(공학박사) - ESG융합컨설팅(컨설팅학박사)	0명
비고	전공별 모집인원을 정하지 않으나, 전공별로 수업이 전혀 다른 관계로 지원자는 반드시 1가지 전공을 선택해야 함(전공 변경기간 내 전공 변경 가능)			

◆ 지원자격

기본자격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취득 예정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 지원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은 제외. ▶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은 제외. ▶ 회사 설립일 1년 이내 또는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기업은 제외. (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여학생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며,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단, 학기개시일은 봄학기 3월1일, 가을학기 9월1일로 봄) ▶ 「근로기준법」 제3조제2호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단,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 졸업(6학기)까지 참여기업에서 근무 필수. 만일, 참여기업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정부보조금 전부 환수 및 제적 처리 (단,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정부보조금 환수는 없으나, 학적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업계에 취업하여야 함)

◆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면접은 전공별로 실시 예정)			
선발기준	1) 서류전형 점수와 구술·면접전형 점수를 각 학과(전공)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2)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동점자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 4) 입학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구술·면접전형에 결시하는 경우에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학생 및 기업 선발) ④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함			
	<table><tr><th>가점부여 기준</th></tr><tr><td>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 「뿌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청년장병진로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11.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tr></table>		가점부여 기준	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 「뿌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청년장병진로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11.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기준			
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 「뿌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청년장병진로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11.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원서접수	2026년 6월 24일 (수) 10:00 ~ 2026년 7월 6일 (월) 17:00 까지. ▶ 인터넷접수 :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인터넷접수(www.uwayapply.com) ▶ 전형료 : 85,000원 (전형료에는 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인터넷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단, 본교 사정으로 전형이 취소된 경우 등에 한해 반환)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부.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출력) 나. 대학졸업증명서,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백분율 점수 기재 필수) 라. 학사 및 석사 편입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편입생만 해당)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바.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및 입학추천서 각 1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 사-1. 사업자등록증 1부. 사-2. 중소기업 확인서 1부. (sminfo.smba.go.kr에서 발급 / 유효기간 내 학기 개시일(2026.09.01) 포함) 사-3.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중견기업만 해당, 중견기업협회에서 발급 / 유효기간 내 학기 개시일(2026.09.01) 포함) 사-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minwon.nhis.or.kr에서 발급) 사-5. 재직증명서 1부. 사-6. 4대 보험 가입 증명서(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혹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모두 가입, www.4insure.or.kr에서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7.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호 대체가능) 1부. (중소기업재직 6개월 증빙자료) 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참여기업이 법인일 경우 제출) 자. 등록금 비율 확정 서류 1부. 차. 참여기업 명의 통장사본 1부. 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부 타. 참여기업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명의 발급) 파. 최근 결산 표준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서 발급) 하. 기업(신용)정보 서약서 1부.		
서류제출	제출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출력한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서류(하단에 ‘사본’ 등으로 표기된 경우 포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은 제외하며,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기 개시일(2026.09.01.)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함)		
	서류제출일	▶ 2026년 7월 8일 (수) 17:00까지		
	서류제출처	▶ 관련 제출 서류는 인터넷 접수 후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박사)에 우편으로(또는 방문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관 1002호(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면접 고사	2026년 7월 18일 (토) 10:00~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대면면접 진행		
합격 발표	2026년 7월 30일 (목) ※ 한성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http://gs.hansung.ac.kr)		
등록금 납부	합격자 등록 2026년 8월 3일 (월) ~ 8월 7일 (금) 23시까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 한성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 입학안내 → 합격자 조회		
	참여학생	▶ 납부은행 : IBK기업은행 전국지점 ▶ 참여학생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참여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납부해야 함	
	참여기업	▶ 납부은행 : IBK기업은행 전국지점 ▶ 참여기업부담금은 반드시 사전에 제출한 법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 증빙자료(이체확인증, 통장 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입학 취소 처리됨 ▶ 이메일 제출 : kscon0829@hansung.ac.kr	

◆ 등록금 금액 및 추가 우대사항

기업유형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2026년 기준 입학금 900,000원
		참여기업 부담금	참여학생 부담금	
중소기업	1,963,000원 (65%)	528,500원 (17.5%)	528,500원 (17.5%)	2026년 기준 등록금 3,020,000원 (100%)
중견기업 I	1,208,000원 (40%)	906,000원 (30%)	906,000원 (30%)	
중견기업 II	-	1,510,000원 (50%)	1,510,000원 (50%)	
▶ 정부보조금은 학위과정인 2년까지 지원가능. (한성대 박사과정은 3년(6학기)과정으로 박사과정의 마지막 1년(5,6학기)은 기업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책정하므로 등록금 변동 시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등록금(100%)에서 정부보조금 65%, 민간부담금 35%(참여기업 및 참여학생)부담 단,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17.5% 이상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			
중견기업 재직자	(유형 I) :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유형 II) :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등록금 우대사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우대사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재교육형 참여학생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65%에서 지원 비율을 상향함. (증빙서류 제출 必)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 가입한 근로자 : 10%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 5%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 5% 4.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 5%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9.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10.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권역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동일 권역 내 대학의 계약학과(석·박사)에 재학 중인 근로자 : 5% 11.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졸업한 자 중,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진학하는 근로자 : 5%			

◆ 보증보험증권 가입 (합격 후)

보증보험 증권	✓ 참여 학생은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 참여 학생은 휴학 등에 따라 의무근무 종료일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연장된 기간만큼 갱신한 후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 개인신용 문제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입학취소가 발생되므로 원서접수 전 확인 필수
------------	--

◆ 3자 계약 체결 (합격 후)

주관대학은 선발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중소기업 계약학과」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재교육형)의 3자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자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 개시일 전까지 최종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3자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1.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참여기업 또는 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2.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 근무기간
3. 계약위반 또는 운영지침 위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참여학생의 정부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필수 조건 : 졸업(박사과정 4학기 수료) 후 1년(5~6학기)까지 참여기업 재직 의무 기간

「중소기업 계약학과」운영지침 제24조에 따라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4학기 수료) 후 최소 1년 이상까지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매학기 주관대학에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4학기 수료) 후 1년(5~6학기)까지 참여기업에서 근무 필수. 만일, 참여기업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정부보조금 전부 환수 및 제적 처리 (단,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정부보조금 환수는 없으나, 학적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업계에 취업하여야 함)

◆ 문의

홈페이지	http://kscon.hansung.ac.kr , http://gs.hansung.ac.kr
기타문의	▶ 이메일 : kscon0829@hansung.ac.kr ▶ 전 화 : 02-760-5987 / 02-760-5693

※ 입학 후 입학조건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도 입학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지원자께서는 입학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 업 규 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표 준 산 업 분 류	※예) 금속열처리업, 철강선 제조업 등 상세 분류 작성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4 대 보 험 가 입 여 부	☐ 가입 ☐ 미가입		상 시 근 로 자 수	명	
업 무 담 당 자	부 서 명		연 락 처		
	성 명		F A X		
참 여 회 망 근 로 자	성 명		지 원 학 과		
	성 명		지 원 학 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ba.go.kr에서 발급)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지원학과		연락처	
근무부서		재직기간 (개월)	년 월 일 ~ 현재 ()
직위		담당업무	
<추천사유> ☐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20 학년도 한성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1부 대표자 : (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등록금 부담 비율 확정 서류】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부담 비율			
성명		기업명	
등록금 부담비율 (1 0 0 %)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	%
※ 등록금(100%)에서 정부보조금 65%(중소기업), 민간부담금 35%(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부담 단,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함. 위와 같이 등록금 부담 비율 확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예, ☐아니오)

2. 신청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명칭, 계약학과 유형, 학위종류, 학생정원, 학생모집 시기, 학점, 학습구분,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학과 명칭	유형	학위	참여인원	모집시기	학기/이수학점	학습구분	운영 기간
스마트융합 컨설팅학과	재교육형	박사	—명	봄·가을 학기	6학기/ 36학점+논문	주말	2015.9.~

제4조(학생 선발)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되,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해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기업 대표”와 연 1회이상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참여기업 대표”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현장실습, 원격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주관대학의 장”의 학사관리에 의하되, 주말, 야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참여기업”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하고, “참여기업”은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등록금 납부) ①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65%	%	%

②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등록금은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기준등록금”을 근거로 산정하며, 해당 기준등록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③ 기한 내에 “참여학생” 또는 “참여기업”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 기준은 운영지침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른다.

제10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 ____년

제11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2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지해야할 경우,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참여학생”에 대해서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제16조(참여기업 시설사용) “주관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대학 시설사용) “주관대학”은 “참여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8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9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조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대학”의 학칙, 운영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한 성 대 학 교	총 장	이 창 원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명)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성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전담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학생)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기업) : (서명 또는 인)